

위안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위안부는 없었’나

우파의 주장

위안부 문제는 왜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새역모는 성노예로서의 ‘위안부는 없었다’고 말한다.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이들이었고 강제적이고 노예적인 착취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금전적 수입을 얻은 ‘공창’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위안부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고 주말에는 쇼핑을 하는 등 ‘잘 지냈다’고 강조한다(하타). 위안부는 ‘예나 지금이나 돈만 생각한다’며 보상을 청구하는 위안부를 비난하고 어디까지나 ‘상호적 성거래’였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들이 일본이 90년대 이후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했다고 밝히고 사죄한 일본 정부에 대해 목소리 높여 비난한 것도 그런 생각이 뒷받침된 것이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위안부는 일반 ‘매춘부’와 다를 바 없는 이들이고, 그런 만큼 ‘위안부 문제’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특

별히 사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에 관한 비슷한 주장은 우리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는 없었다고 말한다. 누구나가 그들이 ‘강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의 인구 자료를 제시하며 위안부가 ‘20만’이었다는 숫자 역시 부풀려진 것이라고도 말한다(www.new-right.com).

위안소 설치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음을 처음으로 밝혔던 위안부 문제 연구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 역시 “관현에 의한 노예 사냥과 같은 연행이 있었는지는 미확인”(요시미, 1997)이라고 말한다. 제주도에서 처녀들을 강제 납치했다고 증언해 유명해진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의 책은 “증언으로서 사용 불가능”(동)하다는 것이다.

또 우파는 위안부들의 증언이 일정하지 않고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비교하며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우파는 이런 주장을 근거로 ‘위안부는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인으로서 갔다’(우에사카 후유코)며 책임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또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는 “그때는 매춘이 인정된 것이었고, 이제 와서 나쁘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작가 소노 아야코(曾

野綾子)는 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하면 “사기(가짜)가 나올 것”(이상 출전은 하타)이라고 말한다. 우파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 중에도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새역모의 교과서가 종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삭제하는 일을 중요한 목표로 삼은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존재한다.

현실적 강제성과 구조적 강제성

그러나, 여성이 성을 파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일 같아 보여도, 결코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여성이 국가와 남성에게 봉사하게 되어 있는 가부장제 구조 속의 일이다. 위안 소가 ‘인정된’ 장소였고 ‘합법적’이었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 ‘법’이 국가와 군이 만든, 남성을 위한 ‘법’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그 ‘합법성’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국가가 그들 자신을 위해 만든 규율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자원’ 한 처녀들이었건, ‘매춘’을 하게 될 것을 알고 간 여성들이었건, 당시의 일본이 군대를 위한 조직을 발상했다는 점에서는 그 구조적인 강제성은 결코 희석되지 않는다.

설사 ‘자발적’으로 돈을 벌려 간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탓에 그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해야 했던 이상—외국인 노동자의 이동 현상과 함께 이런 차별적인 구조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것이 되

고 있다—한 개인이 그런 식의 구조로 들어가도록 만든 국가(일본)에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또 그들이 ‘일본인’으로서 ‘애국’하기 위해 갔다면, 그것을 구조적으로 종용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일본의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우파가 말하는 대로 위안부는 조선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매춘’하는 이들이 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름 아닌 일본의 식민지 체제하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가 된 이상, ‘일본군 위안부’란 식민지화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설사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의 책임 문제로 남는 것이다.

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이후에 밀하게 될 여러 가지 모순은 안고 있지만, 20세기의 국가가 ‘개인’을 ‘국가’(실은 체제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안녕(안전보장)을 위해 이용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국가는 병사를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그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여성을 이용했다. 밀하자면 정작 병사를 위로해야 할 가족과 떼어놓는 대신 ‘위안’부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한 셈이다. 그러나 그때 진작되는 ‘사기’란 ‘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더 많이 죽이기 위한 힘이었다. 더 많은 살인을 위해 여성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오직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동원하고 가담자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도 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필요하다.

물론 전쟁과 식민지 체제 때문에 인생을 망친 이들은 위안부

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병사와 위안부는 ‘국가가 일으킨’ 전쟁의 직접적이고도 가장 참혹한 피해자라는 점에서 ‘보상’의 대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사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그들의 아버지가 ‘애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말로 현혹하여 결과적으로 아버지 없는 아들딸로 서럽게 자라도록 만든 죄에 대해 서라야 한다.

일본 정부의 대응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그래도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그들 나름대로의 대응에 나섰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앞으로 국민기금) 설립이 그것이다. 이 기금은 국민으로부터의 모금에 일본 ‘정부’가 반을 출자하여 만들어진 기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진 적은 없었고, 기금의 성격은 그저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무렵에는 군의 관여를 부정했지만 나중에는 군의 관여를 인정했고, 1993년 8월에 당시의 고노(河野洋平) 관방장관은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상처 입힌 문제”라며 “정부는 이 기회에”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심신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

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하는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사죄했다. 다음 해인 1994년에는 당시의 무라야마 수상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다시 표명하면서 국민도 널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은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프로젝트 발족 때 무라야마 수상은 “일본은 도의적 입장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위안부에게 “국민적 사죄를 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 것이며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 6월에 당시의 이가라시(五十嵐廣三) 관방장관이 기금 설립 사실과 발기인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이른바 ‘양심적 지식인’의 대표 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와다 하루 키(和田春樹)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금에 와다 교수가 참여했다는 것은 ‘국민기금’의 주역들이, 우리가 생각해온 것처럼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이들이라 기보다는 거꾸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왔고 구체적인 책임을 지려고 생각한 이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기금의 첫 이사장이 전 참의원 의장이었고 2000년도에 취임한 2대 이사장이 무라야마 전 총리라는 사실은 이 기금이 표면적으로는 ‘민간기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도 실은 일본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때문에, 발기인은 민간인이었지만 기금 설립을 위한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들

이 참여했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민으로부터의 기금’으로 충당하고 ‘그 밖의 제반 경비는 국가’라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정권 자민-사회-사키가케 연립정당 내에는 ‘여당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팀 종군위안부 문제 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사할린이나 재한 원폭피해자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복지’비를 출자해 지원 단체에게 주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결정했는데, 대장성도 외무성도 이에 합의했다(『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기금』,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음).

또 보상금을 전달할 때 수상의 편지를 첨부하기로 되었는데, 이는 와다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해진 일이었다. 말하자면 이 기금은 ‘국가’가 주체가 되는 ‘보상’은 한일협정 때 한 번 이루어졌으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민간인들이 설득하고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여가면서 이루어진 기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 관계자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금은 그 ‘기본 방침과 구체적인 활동’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1. 보상금

위안부가 된 분들에 대한 보상금은 국민으로부터의 모금에 의거하게 됩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한국·필리핀·대만의 희생자에 대해

한 사람당 200만 엔을 지급합니다.

2. 수상의 편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크게 상처 입힌 행위로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고 있고, 보상을 전달할 때는 한 분 한 분께 수상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진심을 담은 편지를 전달합니다.

3. 의료 복지 지원 사업

전 위안부분들에 대한 의료 복지 지원 사업은 일본 정부가 희생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성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대상국 지역인 한국·필리핀·대만의 희생자에 대해 총액 7억 엔 규모의 정부 자금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희생자분들이 놓인 상황과 희망에 배려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주택 개선, 의료, 의약품 보조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4. 역사의 교훈으로 하는 사업

위안부와 같은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미래로 이어갈 것입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 문제가 교육 현장에서도 올바르게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현대적 여성 문제에 대한 대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오늘의 문제에 대처해나가기 위해 국제 포럼 개최, 여성의 인권에 관한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행해나갑니다.(이상. 국민기금 홈페이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상금’은 ‘국민’으로부터의 성금으로 충당하고 정부가 맡은 역할은 ‘의료 복지 지원 사업’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역할을 ‘도의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 일본 정부는 7억 엔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그것이 ‘보상금’이 아닌 ‘의료 복지’라고 못을 박았을까. 이 배경에는 1965년의 한일협정이 있다. 말하자면 그때 국가 대 국가의 ‘보상’은 일단 끝났으니 다시 한 번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2005년 1월에 공개된 한일협정에 관한 문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한국이 일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사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개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충분히 하지 않고 대신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써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도의적’ 책임의 한계와 평가

그러나 이후, 이런 식의 처리, 곧 ‘보상금’은 ‘국민’에게 담당시키고 정부/국가는 ‘의료 복지 사업’을 맡게 된 부분은 커다란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와 지식인은 물론 정대협 등 위안부를 지원하는 단체와 한국으로부터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어서 ‘국가’ 보상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와다 교수에 따르면, 처음엔 연립 삼당 중 사회당과 사키가케당은 “보상금의 반 정도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 예산’으로 하려면 국회의 입법과 찬동이 필요했고, 1965년의 한일협정 때 공식적인 배상은 끝났으니 출자를 하더라도 ‘보상금’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자민당의 주장이 반영되어 결국은 이 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 보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 각종 복지 사업을 예산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신 ‘기금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 일체는 정부가 지원’하고 ‘국민이 모은 돈에서는 한푼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방침을 일본 정부는 세웠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라야마 전 정권이라 해도 연립내각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런 속에서 얻어진 잠정적 악이 “현 정치 상황하에서는 가능한 최대한”의 것으로 생각했으며 “의료 복지 사업에 정부가 국비로 출자하는 일은 이제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할 것”이니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안부에 대한 ‘속죄’는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한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계”시니 “단기 결전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 계신 동안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일본 내의 비판

그러나 “불충분하다고 부정하면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금 조성에 나섰던 그들의 결정에 대해, 위안부를 지원하는 일본의 여성 단체 바우넷의 대표인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는 기금을 받아들인 것은 “체념이자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얼굴을 보이지 않고 국민이 속죄하라는 묘한 도식”(『임팩션』, 15쪽)이라고 비판한다. 위안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범죄’라고 인정해야 하며 ‘도의적으로 사죄드린다’는 것만으로는 위안부 당사자들이 ‘납득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동, 18쪽).

이에 대해 국민기금 관계자들은 자민당에 대한 체념을 바탕으로 한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었으며 보수 정권인 자민당 중심의 일본 정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민당 정부도 그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강조한다.

(위안부) 지원 운동을 해온 분들은 정부 내에서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모른다. 몇십 몇백 번씩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다른 여성 의원들도 노력했지만 정치 상황이 쉽지 않아 입법화할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지껏 특별 입법으로 하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에 특별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아무도 이 기금을 만

들자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매스컴도 이런 여의치 않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고, 우리도 지원 단체와 한국, 대만에 연립정권 내부에서의 노력과 그 노력이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충분히 전하지 못한 채 기금을 발족시켜버렸다. 이가라시 장관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특파원들과 만나도록 한다든가 3대 신문 편집국이나 논설위원과 만나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은 했지만, 한 사람의 학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국민기금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었다. 참여하는 이들은 수치를 모르는 이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기금』)

일본의 관방장관—정부가 ‘입법’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된 적은 없다. 또 일본 ‘정부’에도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고 정식 ‘보상금’이 아닐지언정 그 보상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출자했다는 점, 또 일본 정부가 이후에도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아시아여성기금에, 각출을 포함해 가능한 한 협력해나갈 것”(관방장관 정례 회견, 2000. 9.)이라는 식으로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역시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야기다.

당시 국민기금 수령자들에게는 하시모토(橋本龍太郎) 수상의 편지가 함께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이번에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통해, 전 종군위안부분들에 대한 일본의 국민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데 따라 제 마음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 입힌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들은 과거의 무게로부터도 미래의 책임으로부터도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발판으로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바르게 후세에 전함으로써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여러 불합리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상의 편지라고는 해도 보상금 자체가 ‘국가’가 주체가 된 것 이 아닌 이상 이 사죄의 편지는 공식 문서보다 그 의미가 낮은 것 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야스쿠니신사에 가는 수상이 ‘개인’ 자격으로 참배해도 결국은 그의 참배가 ‘국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수상’이라는 직함으로 된 이 편지에 ‘국가’를 대표한 성격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니시노는 이 편지조차 “위선으로 도배된”, “진심으로 사죄할 리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니시노의 말대로 이 편지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보여진 ‘형식’(편지 자체)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입법’이 결국 무산된 배경에는 한일협정 때 보상을 했기 때문에 ‘법적’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인식 뿐 아니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의 영향도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 당시의 일본 정부가 혹 과거의 정부가 한 일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면, 즉 과거의 정부와 단절하는 발상이 가능했다면, 그러한 형식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차선책’으로 ‘국민기금’을 만들었다면, 그 속에서라도 ‘도의적’ 차원의 ‘복지’라는 형태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국가’도 함께 ‘보상’한다는 말로 참여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랬더라면 일본은 아마도 출자한 금액 이상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국회의 동의 대신 국민기금을 설립한 10년 전 일본의 선택은 역시 소극적인 것 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니시노가 요구하는 대로 정식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불신

문제는, 일본 나름대로의 노력, 그리고 그에 가해진 엄격한 자기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로서의 국민기금이 한국에서는 단지 ‘국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만 간주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997년에 한국의 일부 위안부 할머니가 국민기금을 받겠다는 뜻을 기금 관계자들에게 전했고 이들에게 기금이 지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사과를 하지 않은, 배상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된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기금 전달에 대해 ‘기습 지급’, ‘도발 행위’, ‘정치 대국이 못 되는 일본’, ‘야비한 해결 대책’이라고 보도했고, 위안부 지원 단체인 정대협은 ‘집요한 희유에 속은 거다’, ‘이중적 태도’, ‘일본 측이 노리는 것은 금전으로 정대협과 피해자들을 갈라놓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이런 유의 비판 논조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2002년에 지급이 종료되자 ‘막 내린 돈의 시험’(『주간 한국』, 2002. 3.)으로 보도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국민기금에 관해서는 ‘발뺌, 술수, 계략, 무마, 철면피, 뺀뺀한’ 등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1997년 5월에는 국민기금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강제연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우리 측에서 만들어졌고, 모금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모금된 돈이 전달될 때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은 7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1998년 5월에는 한국 정부의 위로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게 3,150만 원과 418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정부는 이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국민기금은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정대협은 국민기금의 거듭된 접촉 시도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기금이 “면회를 요청했는데도 거절”하는 사태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이가 국민기금의 관계자라는 이유로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기까지 했다. 우스키 게이코(臼杵敬子)라는 이 여성은 1990년부터 ‘일본의 전후 책임을 분명히 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아 징용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일본 사회에 알리고 지원해온 이였다. 말하자면 가장 ‘양심적인’ 일본인이라 할 수 있는 이의 입국을 한국은 거부한 셈이다. 그는 당시 입국을 금지당한 결과로 피해자들의 ‘재판 활동’ 등의 후원에도 “지장이 있었다”면서, “민족적 자존심이 인권보다 중요한가”(『임팩션』 107, 1998)며 항의했다.

‘정의’의 폭력

정대협이 기금을 받은 이들을 한국 정부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정부가 정부의 보상금을 지급한 이들에게는 일본 정부의 돈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는 것은, 국민기금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위안부 개인의 의지를 피해자 지원 단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그들의 권리를 빼앗은 월권적인 행위는 아니었을까.

선의와 정의감에서 시작되었을 정대협의 행위는 어느새 과거에 국가에 의해 피해를 받았던 이들을 ‘국가’를 대신해 통제하는 행위로 ‘개인’의 의지를 또 한 번 억압한 건 아니었을까. 피해자들을 위한 선의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당사자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일이 아니라 통제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더욱더, 그 정의가 엘리트 여성의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 목적화해버린 부분은 없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대협 관계자가 돈을 수령한 이들을 두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동정금을 받으면 피해자는 자원해나간 공창이 된다”(윤정옥, 1997년 2월의 시민연대 주최 국제 세미나)고 비난했다는 것은, 위안부를 지원하는 이들에게조차 위안부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어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기금을 ‘돈 때문에 받’았다고 비난한 일은 과거에 실제로 ‘돈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판 처참한 경험이 있는 그들을 두 번 울린 일은 아니었을까. 설령 그들이 ‘돈 때문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자격이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러한 정대협의 단정은, 억압받는 하위 계층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늘 상위 계층이라며 “서벌턴(subaltern)은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던 스피박(G. Spivak)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정대협은 기금이 ‘법적’인 것이 아니어서 위안부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고 하지만, 1998년 1월의 국민기금 전달식에서 수상과 이 사장의 편지가 낭독되었을 때, 그에 접한 위안부의 심경은 “이렇게 우리 사정을 들어주고 우리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낭독과 전달의 막바지에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그 자리는 그들이 ‘명예’를 회복한 자리가 못 되었을까. 그때의 위안부의 눈물은 설움의 눈물인 동시에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본질주의적 불신이 낳는 것

보상금을 받는 일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돈을 받은 이들에게 한국 측의 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 성금이 ‘국민기금에 반대하는 이들의 성금’이기 때문이었다는 정대협의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금은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어서 도덕성이 없”다거나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일삼아왔”다는 표현은 기금의 선의까지도 불순한 것으로 보도록 만드는 비난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국민기금의 유혹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켜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일본 정부가 돈으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짓밟으려 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2002년 3월 13

일, 시위 현장에서의 성명, 강조는 필자, 이하 같음) 된다는 말 역시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를 키우는 말일 뿐이다. 국민기금이 완전히 무책임한 자세라기보다는 ‘체념’에 바탕을 둔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이었고 ‘법적’ 책임은 아니었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한 것이었다는 사실조차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대협은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며 “생존자나 유가족에게 보상”하지 않았고 “역사교육으로 이 사실을 계속 가르”치지 않았으며 “피해자 할머니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정대협의 말이 이 20여 년 동안 우리 안의 일본상,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려고만 하는 ‘비도덕적’인 일본상 굳히기에 일조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강제연행’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군의 관여는 ‘시인’했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기금’을 통해 ‘생존자’에게 ‘보상’하려 했으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일본의 교과서들은 위안부에 대해 대부분 언급했었다. 그 언급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배경으로 인한 최근의 일일 뿐이다. 그러한 사실조차 보려 하지 않는 정대협의 비난은 그나마 일본의 성의조차 짓밟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대협의 발언의 문제점은 “전범국 일본의 본성인

군사 대국화 및 해외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2002년 6 월 17일의 512차 수요시위 발언)이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본’이라는 나라란 원래부터 ‘군사 대국화 및 해외 침략 의도’를 갖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본질주의적인 사고에 있다. 일본을 향한 ‘전범 국’이라는 말은 마치 ‘전파자’라는 말처럼 끊임없는 불신을 야기 하는 폭력적인 호명이다.

그러나 ‘전범’이라는 말이 국제적 전쟁 규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규칙마저 짓밟는 일을 행했다는 의미라면, 단지 승리를 위해 원 자폭탄 투하와 대공습을 감행해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한 미국도, 위안부를 모집한 또 다른 나라들인 독일이나 소련도,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때 위안대까지 만들어 운영했다는 한국도(김귀옥) 같은 말로 규탄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일본이 ‘군사 대국’인 것은 사실이고, 군대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상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로의 파병—침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 그러나 ‘해외 침략 의도’라는 말에서처럼 그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라 단정 하는 담론은 우리의 근본적 불신이 시키는 말이다. ‘전파’가 있는 이에 대해서라면 어떤 말로 비난해도 좋다는 생각이 혹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이윤기, 〈중앙일보〉, 2005. 7. 1.), 이는 또 다른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국민기금은 분명 ‘공식 사죄’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법적 배상’이 아니었음도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완

벽한’ 형태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옳은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분간 불가능해보인다고 한다면, 그 때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일까. 정대협의 표현처럼 ‘100년 걸린’ 후에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그때의 승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본’을 상정하는 것은 어쩌면 ‘완벽한 승리’ 자체에 대한 열망의 산물일 수도 있다.

일본의 보상금을 받은 한 위안부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전체를 준다 해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김군자, 〈한국일보〉, 1997. 1. 14.)

우리 안의 책임

일본을 향한 우리의 비난에는 우리 자신은 결백하다는 확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피해자’로만 떠올리는 일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해자로서의 ‘책임’은 과연 일본에만 있는 것일까.

위안부들의 증언집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풀빛, 2001)에는 의붓아버지에 의해 기생으로 팔리고 거기서 다시 팔려간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한국인 포주가 깊이 간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타난다. 위안부들은 남편인 “영감한테 속아서” 가기

도 했고, “집안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 팔리기도 했고, “돈 벌러” 가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 이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이끈 것은 대부분 “쌀밥”的 유혹이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증언에 등장하는 “문앞에서 돈 받은 놈” 혹은 “우리 밥 주구 옷 입히구 또 우리 데리구 거까지 간 놈”, 또 데려간 비용을 요구하며 “벌어 갚으라”고 했고 “도망—폭력—감금”한 것은 누구였을까. 위안부의 “항의에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들은 누구였을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 딸을 팔아넘긴 양아버지(김군자, 2003년 10월의 인터뷰)나 “손목을 나꿔채며 가지고 했다”는 “조선 남자 2명”的 존재는 이른바 “강제로 끌어간” 주체가 다름 아닌 우리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주인댁 배운 여자’와 가난한 처녀

한 위안부는 “(정신대로) 주인댁 배운 여자들보다 자신이 가야 할 것 같았다”(황금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주인댁 배운 여자’란 누구였을까. 이는 위안부라기보다는 정신대 모집에서 일어난 선택이었겠지만, 가난한 처녀들을 정신대로 보내고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그녀들은 누구였을까. 이 발언은, 이미 지적되고 있는 사실, 위안부 문제가 실은 ‘가난한’ 여성들이 그 대상이 된 ‘계급’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전쟁터에서의 위안부란 직접적으로는 ‘강간’을 막기 위해 고안된 존재였다(요시미, 1998, 27쪽). 그런 의미에서는 ‘허용된 강간’의 성격을 지닌 매춘은 일반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위안부란 구조적으로는 일반인 여성을 위한 희생양이기도 한 것이다. 2005년 봄 집창촌 단속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때 한 국회의원은 집창촌이 없어지면 18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의 성욕을 처리할 곳이 없어진다는 웃지 못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남성의 성욕을 본질화하는 것인 동시에 매춘부의 존재가 일반인 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반인 여성은 ‘매춘’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매춘’이 지탄받으면 받을수록 ‘순결’한 ‘정조’를 지닌 일반 여성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정대협의 대표가 기금을 받은 이들을 ‘공창’이라고 말한 것은 그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위안부로 보내지는 처녀들을 보며 묵인하거나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낸 이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 일반적인 인식대로 강제로 길에서 끌어갔다고 한다면, 정말로 난폭한 폭력의 장이었다면, 그럼에도 아무런 반발이나 저항이 없었다면, 그렇게 상황을 보고만 있었던, 방관했던 사람들에겐 책임이 없는 걸까.

최명익의 단편 「장삼이사」(『비 오는 길』, 문학과지성사)에는 위안부가 될 여성을 만주로 데려가는 조선인 포주가 등장한다. 이 소설

이 그리고 있는 것은 납치라기보다는 극히 일상적인 인신매매의 풍경이다. 그리고 작가의 시선은 나어린 처녀들에 대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이들 조선인—인신매매인들에게 가 있다.

가해와 책임을 묻는 일의 어려움

무엇보다도 일본군 병사이기도 했던 조선인 병사들이 위안부 시설을 이용했다는 사실, 또 한국전쟁 때 한국군이 위안대를 만들어 경영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위안부란 무엇보다도 ‘군대’라는 집단을 위한 존재였고,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군대’=군사주의에 있다. 그 군대와 군사주의가 기본적으로 남성의 세계라는 점에서는 ‘남성’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탄광촌 등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이른바 ‘기업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정진성, 윤영숙, 니시다)은 위안부 문제에서 ‘책임’자를 묻는 일을 한층 더 어렵게 한다. 딸을 판 부모와 처녀들을 팔아넘기고 끌어간 인신매매단과 방관한 이웃과 그 처녀들을 관리한 포주들의 일을 모두 식민지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군보다 아버지가 더 미운”(김군자, 2003년 10월의 인터뷰) 위안부가 있는 이상, 그 미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딸을 팔아넘기는 아버지란 물론 가부장제가 야기시킨 존재다.

또 ‘조선인 노무자’와 ‘조선인 병사’가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 기업에 의한 피해자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위안부에 대한 ‘가해’의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남성의 ‘성욕’이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신화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찾는 이유는 성욕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죽음을 의식한 것이기도 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여자’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나 여자에 의해 ‘위안’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많은 소설과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대로다.

남성은 왜 여성을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아는’ 것이 지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을 ‘아는’ 일이란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일임에 분명했다. 남성의 ‘동정’이 ‘떼어야’ 할 무엇으로 간주된 것도 그래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암이 남성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한 남성은 여성의 ‘지배’자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러한 남성 사회의 관습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관계의 폭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게 된 데는 따돌림 당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심약한 병사조차 남성 공동체의 유대 관계를 다져야 하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폭군이 되어간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벌어진 무의미한 강간과 살육 뒤에는 서로를 공범화 하려는 가여운 남성들이 있었다. 그것은 동지애라는 이름의 공범화이기도 했다. 그런 그들에게 전쟁터에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여성이란 국가로부터 제공된 ‘보상’의 의미가 있었다.

식민지의 청년들이 조선 치녀들보다 먼저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일등 국민’이 되고 싶어서 지원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일인 ‘군인’으로 만들어 의도치 않은 ‘가해자’가 되게 만든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만든 ‘국가’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조에 저항하지 못하고 가담했던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일본의 청년－군인들에게 있다면, 조선의 청년들에게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

그러나 위안부를 둘러싼 우리의 기억은 아직 총체적인 피해자상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요시미 요시아키가 엮은 『자료집 종군위안부』(서문당, 1993)에는 7, 8세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어린 소녀까지 포함된 ‘1945년 도암면의 치녀회’라는 사진이 이들이 ‘정신대’로 동원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나와 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도 유통되고 있는데, 근로대로서의 ‘정신대’로 보는 것도 어려울 그 소녀들이 ‘위안부’로 소개되는 데 대한 의구심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강고한 피해 의식이다. 이 자료

집에는 또 밝게 웃으며 강을 건너는 위안부의 사진이 실려 있다. 물론 그들의 미소를 그대로 ‘위안부가 잘 지냈다’는 증거로 읽으려 하는 일본 우파의 시도는 ‘책임’을 부인하는 말인 만큼 거부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미소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균일한 위안부상, 그 참혹상에 균열을 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의 「메뚜기(蝗)」나 「춘부전(春婦傳)」, 그리고 후루야마 고마오(古山高麗雄)의 「매미의 추억(セミの追憶)」 등에는 병사와 위안부의 연애(필자가 만난 이들 중에는 일본군 병사와의 사랑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위안부도 있었다)와 위안부의, 알려진 것 보다 평온한 일상이 그려져 있다. 그러한 장면들 역시 위안부에 관한 우리의 공식화된 담론, 우리의 통합적 이해에 균열을 가하는 잡음(노이즈)임에 분명하다.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로 지냈다는 패턴화된 위안부 이미지는 우리에게 다른 위안부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정형적 이미지와 ‘다른’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곧 일본의 책임을 면죄하는 일은 아니다. 피해를 강조하려는 피해자의 욕망과 피해를 축소하려는 가해자의 욕망은 늘 비례한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사실을 보는 일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성’의 문제이며 ‘계급’의 문제이다. 현대 일본인들이 ‘일본’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때 가난한 그녀들을 위안부로 보내고 학교나 결혼으

로 도피할 수 있었던 유산계급—결과적으로 정숙한 여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의 후예이며 조선인 모집책의 후예이며 그들을 유린한 조선인 남성의 후예인 한국인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 안의 책임을 묻는 일이 일본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발안’하고 ‘명령’한 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수행’한 자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

위안부와 애국

위안부의 증언에는 “정신대가 뭔가? 나는 보국대는 갔다왔는데”라는 식으로 ‘보국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보국대란 무엇일까. ‘정신대’가 몸을 바쳐 (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하는 것처럼, ‘보국대’는 나라에 보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당시의 조선인은 일상적으로 ‘천황’에게 ‘보은’할 것을 맹세해야 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국가와 천황이 내린 것이라는 사고를 갖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었다. 위안부로서의 보국대란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군인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보국’을 한 셈이다. 위안부 관련 자료에 보이는 ‘애국식당’이라는 간판(김부자 발표 자료)은 그러한 위안부와 국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패전 후 점령군이었던 미군을 위해 여성을 공급하는 시설

을 만들었다. 그들이 기지 주변에 위안 시설을 만들어 여성을 공급한 이유는 ‘일반’ 여성들이 강간당할 것을 두려워해서였다. 한국 정부 역시 같은 일을 했는데, 그때 정부는 미군 기지의 매춘 여성들에게 “미군에게 만족을 드리는 여러분은 모두 애국자”(캐서린 문, 196쪽)라며 그런 만큼 “나라의 일꾼이니 긍지를 갖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었던 여성들 역시 ‘애국자’로서 봉사하기도 한다며 뚜렷한 ‘명예 의식’(동, 180쪽)을 갖기도 했다. 그곳은 오히려 ‘애국’하는 장소의 의미까지 부여받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1970년대에 생긴 매춘금지법이 기지촌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성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발적으로’ 이용당한 셈이다.

앞서의 요시미 자료집에 나오는 위안소 앞에 보이는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일본 여성의 서비스’, ‘성전대첩의 용사 대환영’이라는 문구, ‘대일본 국방부인회’라는 띠를 두른 여성들의 존재는 바로 그것을 응변하는 자료다.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조선인’ 여성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일본인을 포함한 ‘여성’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의 지적(1998)에 대해, 니시노 루미코는 일본인 위안부는 애국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니시노, 22~25쪽). 또 안연선은 일본인 위안부는 자신을 애국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만 조선인은 창녀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위안부 사이에 ‘민족적 위계질서’가 있었다는 것이다(안연선, 251쪽).

그러나 ‘민족적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애국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민족적 위계질서’야말로 ‘일등 국민’을 향한 식민지인의 욕망을 강화시킨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소설에 등장하는 가난한 집안 남성들이 더 빨리 출세하는 길로 군인을 선택했던 것처럼, 조선인 위안부 역시 충분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보국대’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자료들은 말한다.

다무라의 소설 「춘부전」에는 일본인 위안부가 주로 도회지로 나가 장교를 상대했던 데 비해 산속 부대까지 와서 병사들을 상대해주는 것은 조선인 위안부였음이 나타나 있다. 자신들을 상대하려 하지 않는 일본인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인 병사의 시선은 그래서 묘한 원망감 섞인 것이었다.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의 ‘차이’는 그렇게 계급적인 것이었다.

훈장과 멸시

사망한 위안부들이 국립 망향의 동산에 묻히게 된 것은 그들이 전쟁 피해자라는 면에서는 타당한 처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안치되는 일이 ‘국가유공자’(안연선, 276쪽)로 전환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위안부의 존재가 ‘애국’하는 존재이기도 했음을 말해버리고 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로 ‘애국’의 틀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의미에서는 위안부 역시 당연히 국립묘

지에 안장되어야 할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위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참아낸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훈장이나 양지바른 무덤이 아니라 더럽혀진 여자라는 오명뿐이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이 평가받지 못해온 ‘가정’과 비슷한 구조가 병사와 위안부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면, 그것은 애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피해 입은 한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라야 한다. 역사의 한 시기에 군인들을 위해 희생된 여성으로서 국가가 어떻게 여성을 이용했는가를 되새긴다는 의미로서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위안부에게 보상한다면 자신에게도 배상하라고 말했다(캐서린 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요구일 수 있다. 그때 배상을 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와, 국가의 안정 덕분에 안온했던 기업과 개인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몰 용사’들의 모임은 위안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계획에 반대한다(안연선, 216쪽). 그것이 위안부의 존재를 ‘수치’로 보는 심리에 의한 것이라면, 그 ‘수치’감은 이른바 ‘일본의 우익과 같은’ 감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위안부에 대한 수치감은 다름 아닌 우리 군인들 안에도 있다(한 노인은 필자에게 위안부들에 대해 “그 사람들 다 돈 받으려고 하는 짓이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이 사실은 함께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했으면서도 위안부들만이 삭제

되고 망각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왜 생겼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위안부가 ‘성’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수치라면, 또 그 위안부의 힘을 빌린 남성들의 존재가 수치라면, 최대의 수치는 무엇보다 전쟁 수행=‘살인’이라 해야 할 것이다. 병사와 위안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대립적 위치에 있지만 국가가 (그곳에 속하는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하는 전쟁에 의해 가장 처절하게 훼손되는 ‘개인’이라는 점에서는 함께, 국가 시스템이 야기시키는 최대의 전쟁 ‘피해자’이기도 하다.

인간으로서의 ‘일본군’

‘일본군’에 대한 우리의 획일적 사고는, 위안부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우는 위안부를 달래는 군인(『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84쪽)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군인 혹은 일본에 휴가를 다녀올 때면 선물을 사다 주는 군인(동, 85쪽)들을 거부한다. 위안부와의 관계에 ‘달콤한 추억’을 갖고 있으며 ‘진정한 인간적 만남’이 있었다고 말하는 군인에 대해 한국인 연구자가 “상호적인 연애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안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부인할 우려가 있다”(안연선, 131쪽)고 말하는 것은 그런 현상 중의 하나다.

거기서는, 위안부가 분명 성폭력의 피해자이지만 다른 군인들에 의한 ‘폭력’을 또 다른 군인과의 감정적 교류에 의해 상쇄시키고 있었을 수도 있는 위안부 이전의 ‘개인’으로서의 ‘감정’이 무시

되고 있다. 군인과 위안부의 로맨스에 대해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인간적 제스처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산된 의도를 숨긴 채 위안부들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간접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안연선, 107쪽)라는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눈 역시 ‘일본군’이 일본군 이전의 ‘인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배제한 시각이다. 그것은 또, 우리의 이해와 다른 방향으로 ‘위안부’를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안부들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군인들이 전쟁 말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더 친밀한 연애 관계’가 있었다고 말하는 데 비해 ‘폭력이 더 심해졌다’는 위안부의 기억(안연선, 133쪽)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군인과 위안부의 연애란 죽음을 앞둔 군인들의 생에 대한 절박한 갈망의 표현이었을 테지만, 그런 감정을 공유할 대상이 없는 군인들은 그 절박한 절망의 감정을 폭력으로 표현했을 테니까.

우리 안의 가해성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 이른바 친일파 이외의 모든 조선인이 일본인과 자신을 구별하고 있었고 의식적으로 저항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상상과는 달리

그 시대에는 조선인으로서 꽂꽃하게 선 이들뿐 아니라 중국을 전쟁 상대로 돌리고 중국인 앞에서 ‘일본인’으로서 군림하려 한 이들 또한 적지 않았다.

“중국 사람들이 너희들이 일본놈하고 한 편 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죽였” 다거나(『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107쪽) ‘함부로’ 사람들을 죽였고(동, 130쪽), 사정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들은 당시에 중국인을 차별하는 오만한 조선인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다.

일본이 전쟁에 패한 뒤 고국으로 되돌아가던 많은 일본인 여성들은 만주와 조선 땅에서 강간을 당했다(동, 129~130쪽, 요시미, 1998, 222쪽). 그들은 일본에 도착해 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고, 긴 세월 동안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 그들이 ‘가해국’ 여성이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여성이라고 하는 섹슈얼 아이덴티티보다 ‘일본인’이라고 하는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20세기 내내 우리에게 늘 우선시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다.

민족이라는 단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일은 그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를 은폐 한다. 또 민족 내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정확히 보는 일을 방해한다.

물론 우리 안의 책임을 말하는 일은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쓴 한국인 김완섭이 위안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거론하자 새역모

의 중심 멤버인 니시오 간지가 이를 환영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일한 대토론』), 새역모를 비롯한 일본의 우파들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누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다. 같은 ‘사실’이라도 누가 왜 그 말을 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 안의 차별

그러나 현재의 한국에서 ‘우리 안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2004년 9월에 일어난 이른바 ‘서울대 교수 망언 사건’은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한 교수가 과거 청산과 친일파 진상규명법을 둘러싼 텔레비전 토론에서 위안부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 ‘강제’성을 부정했다. 그 교수가 말한 것은, 친일파 진상규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으로 규정되는 이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이들을 면죄할 수 있다는 것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만을 비난하지만 당시 위안부를 모집한 조선인 모집책, 위안소를 이용한 조선인 병사, 나아가 한국전쟁 때 위안소를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미군 부대 주변에 기지촌을 두고 있는 ‘한국’ 역시 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 상식화된 ‘강제’ 이미지에 대한 부정과 해방 후 한국의 기지촌과 도심 윤락가에 관한 언급이 곧바로 ‘공창’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그 발언은 ‘일본의 우익’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위안부 할머니를 창녀에 비교’

하는 데에 분노했고, 몰려드는 비난 공세에 이 교수는 잠시 잠적해야 했다.

정대협 역시 토론 다음 날인 9월 3일의 성명을 통해 “일본에서 도 우익 중의 극우익에서나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며 ‘공개 사과’와 ‘교수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사과하지 않으면 연구실로 찾아가겠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은 교수가 며칠 뒤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 앞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안부가 ‘공창’이 아니라고 강조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시각에도 ‘공창’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안부가 이른바 ‘상업적’ 여성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 역시 이러한 차별적 시선의 소산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디까지나 어느날 갑자기 끌려간, 순결한 딸이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른바 정숙한 여성—여염집 처녀와 창녀를 본질주의적으로 구별하는 이러한 시선이야말로 해방 후 50년이 지나도록 그녀들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해방 후에도 그들에게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허용하지 않았던 시선이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매춘’녀였던 여성은 없다. 미군 기지 주변의 매춘녀 중 ‘강간’이 계기가 되었다는 증언 등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들 역시 가난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어느날 매춘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강간이건 납치건 인신매매건, 어느 날 ‘주변 사람의’ 폭력에 의해 몸을 팔게 되었다는 의미에서는 위안부 역시 매춘부일 수밖에 없다.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매춘부’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매춘에 대한 차별적 시선인 것이다.

군사기지 주변의 이른바 기지촌 여성들도 ‘국가’의 안보—‘전쟁 억지’의 명목으로 주둔하는 ‘군인’을 위해 제공되는 여성들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위안부’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차이는 그들이 몸 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전시인가 평상시인가의 차이일 뿐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1970년대에 매(매)춘금지법이 실시되면서도 그 법이 기지촌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미군’을 위해 여성의 성적 유린을 묵인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그들이 수입을 얻었는가 아닌가, 즉 ‘공창’인가 아닌가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위안소라는 장소가 ‘국가’의 묵인—공인하에 만들어지고 운영된 장소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일본의, ‘국가’로서의 보상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의 미군 기지 주변의 ‘공창’ 역시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묵인한 위안소와 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즉 ‘국가’가 용인했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공범 관계일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책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다.

사건의 주인공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윤락 가를 언급해 오해의 소지를 크게 만들었지만, 민간인을 위한 윤락가 역시 근대 이후 늘 ‘국가’가 관리해왔다는 점에서는(후지노)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위안부가 ‘공창’이기 때문에 일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일본 우익의 모순은, 위안부를 공창 취급했

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창’이야말로 국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 안에 위안부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은 문제를 다시 원점에 서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 원점에서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일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승연 사건과 이영훈 교수 사건에서 그들이 무조건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 이전에 2000년대 한국에서 ‘정대협’과 위안부의 발언이 특권적인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자’의 보호를 말하는 일은 어떤 경우 권력화되고 절대적 정의로 군림하기도 한다. ‘친일적인 발언’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 역시 정치적 올바름의 폭력이 만든 발상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넘어서

국민기금을 만든 와다 교수를 두고 일본의 지식인들(스즈키, 국민기금 홈페이지)은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권력’의 입장으로 전향했다고 비판한다. 그렇게 일본의 시민과 지식인은 정부를 비판해왔지만, 그 후 10년 동안 정부는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강경해졌다. 그들의 비판은 정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

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판의 효용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기금에는 일본 국민이 낸 개인의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돈을 낸 일본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일본 민주 국민의 사죄와 보상 의무로서 모금 모집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일본은 인도적 평화 노선을 관철하고 과거의 반성과 사죄하는 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각출금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가고시마 현의 여성)

“‘민중 쪽의 전쟁 책임’을 자각하는 표시로 참가합니다.”(익명)

“저희는 국가 보상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고 그 마음이 받아들여 지도록 노력해나가고 싶습니다. 100년이 걸리건 200년이 걸리건, 자손들에게 전해가야 할 일본인의 책임입니다.”(시조의 여성)

“전쟁 중에 저는 아직 어렸지만, 나중에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알고 희생된 그 여성들의 억울함이 느껴지면서 그런 비인도적인 정책을 실시한 일본군에 대한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이 죄의 책임은 일本人 한 사람 한 사람이 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히로시마의 남성)

“돈으로 보상이 될 일은 아니지만, 일본인이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익명)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죄의 마음이 피해자의 가슴에 가 닿기를 바라며.”(오사카의 여성)

“원래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하에 서 발기인과 임원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진행시키시는 데 대해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등 각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얻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가와사키의 남성)

“인도네시아에서 종군한 경험이 있습니다. 매스컴이 말하는 만큼 강제 매춘이나 강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만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위안소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절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조후의 남성)

“이 나라 사람인 이상, 이 나라의 과거의 잘못, 역사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군 위안부가 된 여러분께 일본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합니다.”(전쟁을 모르는 27세 젊은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 들어왔기에, 소액이라 송구스럽지만 전달 합니다. 과거의 일본인의 ‘죄’를 우리 젊은 일본인들은 젠나갈 생각입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장래 사회 선생님을 지향하는 학생입니다.”

“금년에 90세가 되는 어머니가 이전부터 정부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노령이신 피해자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범한 죄에 대한 사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교과서에서 배웠다. 눈물이 흘렀다.”(중학 3학년생)

“학교 축제에서 모금. 우리가 살아 있는 한 미래의 책임, 그리고 현재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교생) (이상, 국민기금 홈페이지 및 와다)

이밖에, 자신의 아버지가 위안부를 샀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싶었”다는 이도 있다. 모금에 참여한 이들의 의견은, 정부보다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즉 국가뿐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보상이 중요하다는 생각, 혹은 정부의 보상이 중요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배려한 기부였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참여 계기는 결코 단일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공통되는 것은, 전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던 아직 어린 학생부터 직접 관여했던 노인까지, 또 남성도 여성도, 일본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들 나름대로 ‘일본’에 속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기금에 ‘국회의원, 자위대원, 외무성 직원’도 성금을 냈다는 것은(『임팩션』, 107, 1998) 그들이 ‘개인’이면서도 좀 더 ‘국가’에 가까운 입장에서 책임을 지려 한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금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국가’가 주체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를 보통 일본인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국가’를 대변하려는 뜻이 있었다. ‘나눔의 집’을 늘 지키고 있

는 자원봉사자는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인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의 ‘개인’이지만 ‘일본인’으로서 자신들의 속죄하는 마음을 표하는 그들의 행위는 ‘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어서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일본 국민이 후소사(扶桑社)의 교과서를 거부한 것은 정부가 허용한 교과서를 거부한 일이기도 했다. 그것은 거꾸로, 이미 정부나 국가의 형태나 행동이 꼭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왔다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자신들의 의사 를 대변하지 못한 국가—정부를 넘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위안부의 피해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는 만큼 책임을 ‘국가’에게로만 돌리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 ‘국민’을 면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문제인 친일파 청산과 마찬가지로, ‘주체’의 호명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늘 다른 누군가를 면죄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국민은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였다. 혹은 가해자였지만 피해자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가’ 배상만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그러한 복합적 구조를 은폐한다. 또 지금에 기부한 일본인의 목소리, 국가를 넘어 ‘개인’으로서 책임을 지려 하는 의식을 외면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전후에 ‘새로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일본 사회’(니시노, 23쪽)라는 일본 지식인의 인식과 이러한 ‘보통’ 일본인의 존재는 어떻게 상존하는 것일까. 전후의 일본을

자민당이 장기 집권해왔다는 점에서, 또 몇 번씩 교과서를 둘러싼 반발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안 변했다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에 기부한 시민의 목소리는 분명 전전의 군국주의 국가의 ‘국민’의 목소리는 아니다. 그렇다면 역시 ‘변화’는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변화’를 보지 않는 자세는 지극히 도덕적이지만 원리주의적 모럴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과 국가가 함께하는 보상

수요일마다 행해지는 일본 대사관 앞 시위는 일본 정부에게는 아마도 ‘이미 해결된’ 문제에 연연하는 행위로 보일 것이다. 또 국민기금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한 이들이라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일협정 문서가 공표된 것을 계기로 협정 때의 처리가 과연 충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논의는 어디까지나 일본이 주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역시, 그동안의 비판과 거부 방식이 과연 옳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비난과 못 들은 척 무시하는 지리한 대립의 틀을 이제 함께 깰 필요가 있다.

한일협정에서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들에 대한 ‘보상’ 문제 또한 거론했으면서도 명목상으로는 경제협력 자금과 ‘독립 축하금’으로 했다는 점은 역시 당시의 일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마음이 없었거나 최소한 명확히 나 타내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야말로 결국 실제로는 ‘보상금’일 수밖에 없는 돈을 건네면서도 기금을 공식적인 ‘보상’이 될 수 없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식민지 지배의 ‘책임’에 대한 의식을 명확히 하지 않은 틈에, 실제로는 사죄도 하고 보상도 하면서도 한 만큼조차 인정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안부 문제가 한일협정 이후에 나온 문제이니 일본에 다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위안부 문제가 가려졌던 것이 그들을 차별한 한국 자신의 가부장적 사고에 있었다는 점을 잊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한 번씩은 더 이상 과거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일로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특히 김영삼 대통령) 대통령들의 발언은 개인의 청구권을 동의 없이 빼앗은 가부장제적 사고가 드러난 것은 아니었을까. 오빠나 아버지나 남편이 여성 구성원의 권리를 대변할 때처럼 그때 위안부의 ‘말할’ 권리라는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절반의 실적을 거두는 데 그친 국 민기금은 2007년에 해산된다고 한다(예정대로 해산됨). 그리고 이제 한국 측이 보상을 새롭게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과거에 국

가가 보호하지 못했던 이들에 대한 보상에 한국이 나섰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개인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써버린 포항제철을 비롯한 기업들도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이들 주체가 함께 취해야 할 입장은 개인으로서의 ‘일상’을 각자의 이익을 위해 교란시킨 주체로서다. 특히 국가는 국가의 호명에 호응하도록 세뇌시켜 개인의 행복을 앗아버린 데 대한 사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새롭게 시도될 한국 측의 구상이 이전에 한 번 보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의적’인 차원의 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외교부 관계자), 한일협정과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을 답습하는 것이어서 시사적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에 ‘법적 배상’을 요구한다면 그 ‘법적 배상’의 대리인이었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법적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일본에 대한 지난 10년의 요구에 대해 이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김귀옥(金貴玉), 「韓國戦争と女性:軍慰安婦と慰安所を中心に」『東アジアの冷戦と國家テロリズム:米日中心の地域秩序の癡絶をめざして』, 御茶の水書房, 2004.
- 김부자(金富子), 國際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變容する戰後東アジアの時空間』シンポジウム 資料, 2003. 1, 11.
- 나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元「慰安婦」元軍人の證言錄 敗戦50年目』, マスコミ情報センター, 1995.
- 나시다 히데코(西田秀子), 「戦時下北海道における朝鮮人「勞務慰安婦」の成立と實態—強制連行との關係性において」, 『女性史研究』創刊號, 2003.
-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아시아 여성기금 홈페이지(www.awf.or.jp)
- 와다 하루카(和田春樹) 외 편,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東信堂, 1998.
-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자료집 종군위안부』, 서문당, 1993.『일본군 군대 위안부』, 소화, 1998.
- 요시미 요시아키·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 編著, 『從軍慰安婦をめぐる30のウソと眞實』, 大月書店, 1997.
-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青土社, 1998.
- 정진성(鄭鎮星), 「強制労働期の企業慰安婦研究」, 『女性・戦争・人権學會第 回大會資料集』, 2003. 6. 15.
- 크리스티 파울(クリスター・パウル), 『ナチズムと強制賣春』, 明石書店, 1996.
-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慰安婦と戰場の性』, 新潮選書, 1999.
- 후지노 유타카(藤野豊), 『性の國家管理』, 富士出版, 2001.『インパクション』107, 1998.
- 나눔의 집 역사관 후원회,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2.
- 안연선, 『성노예와 병사 만들기』, 삼인, 2003.
- 윤영숙, 「기업 위안부에 대한 연구실태와 과제」, 『군산대 환경해연구원 제3차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2004.
- 캐서린 문, 「한미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몸과 젠더화된 국가」, 『위험한 여성』, 삼인, 2001.
- 정대협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경칭은 생략했다.